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59

발의연월일: 2020. 12. 28.

발 의 자:고영인·김민철·김승원

김홍걸 • 김회재 • 박성준

서영교 · 송영길 · 양경숙

윤관석 • 윤미향 • 이상헌

이성만 • 이수진 • 주철현

황운하 의원(16인)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 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법률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
			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